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(2006. 1. 1시행)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정리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“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”로 변경(안 제1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같은법 시행령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6. 4. 25~ 5. 15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